

의안번호	2201637
의 퇴 인	박선원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계번호	24E19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3.1조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9.9조원(연평균 △10.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안 제55조제1항)	-3.1	-9.6	-10.4	-12.3	-14.5	-49.9	-10.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55조 (세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 개정안의 물가조정계수는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로 정함, 매년 반영																														
		<table><tr><th rowspan="2">세율</th><th colspan="2">과세표준</th></tr><tr><th>현행</th><th>개정안</th></tr><tr><td>6%</td><td>0~1,400만원</td><td>(0~1,500만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15%</td><td>1,400~5,000만원</td><td>(1,500~6,000만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24%</td><td>5,000~8,800만원</td><td>(6,000만원~1억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35%</td><td>8,800만원~1.5억원</td><td>(1억원~1.5억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38%</td><td>1.5억원~3억원</td><td>(1.5억원 ~ 3억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40%</td><td>3억원~5억원</td><td>(3억원 ~ 5억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42%</td><td>5억원~10억원</td><td>(5억원 ~ 10억원) × 물가조정계수</td></tr><tr><td>45%</td><td>10억원 초과</td><td>(10억원 초과) × 물가조정계수</td></tr></table>	세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	0~1,400만원	(0~1,500만원) × 물가조정계수	15%	1,400~5,000만원	(1,500~6,000만원) × 물가조정계수	24%	5,000~8,800만원	(6,000만원~1억원) × 물가조정계수	35%	8,800만원~1.5억원	(1억원~1.5억원) × 물가조정계수	38%	1.5억원~3억원	(1.5억원 ~ 3억원) × 물가조정계수	40%	3억원~5억원	(3억원 ~ 5억원) × 물가조정계수	42%	5억원~10억원	(5억원 ~ 10억원) × 물가조정계수	45%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 물가조정계수	
		세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	0~1,400만원	(0~1,500만원) × 물가조정계수																												
		15%	1,400~5,000만원	(1,500~6,000만원) × 물가조정계수																												
		24%	5,000~8,800만원	(6,000만원~1억원) × 물가조정계수																												
		35%	8,800만원~1.5억원	(1억원~1.5억원) × 물가조정계수																												
		38%	1.5억원~3억원	(1.5억원 ~ 3억원) × 물가조정계수																												
		40%	3억원~5억원	(3억원 ~ 5억원) × 물가조정계수																												
		42%	5억원~10억원	(5억원 ~ 10억원) × 물가조정계수																												
		45%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 물가조정계수																												
		○ 부칙에 따라,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5조(세율)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세수효과를 추계하였으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세수효과 추계하지 못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근로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
 - 양도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하여 3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과세표준 구간별 100여개 구간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동 자료는 국세청의 집계자료(aggregate data)이며,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연도 통계자료임(국세청의 내부 자료)
 -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하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여 추계
 -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현황 합계를 연간 신고현황으로 전제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 효과 추계가 곤란
- 물가조정계수는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르고 전제하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법안에서 물가조정계수는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로 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이를 준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물가조정계수 적용한 연도별 과세표준

- 물가조정계수는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르고 전제하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5 ('25) 2.1 ('26) 2.0 ('27) 2.0 ('28) 2.0 ('29) 2.0
 -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구간금액은 전년도 과세표준 구간금액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2] 물가조정계수 적용에 따른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구간

(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6%	~1,500	~1,538	~1,570	~1,601	~1,633	~1,666
15%	~6,000	~6,150	~6,279	~6,405	~6,533	~6,663
24%	~10,000	~10,250	~10,465	~10,675	~10,888	~11,106
35%	~15,000	~15,375	~15,698	~16,012	~16,332	~16,659
38%	~30,000	~30,750	~31,396	~32,024	~32,664	~33,317
40%	~50,000	~51,250	~52,326	~53,373	~54,440	~55,529
42%	~100,000	~102,500	~104,653	~106,746	~108,880	~111,058
45%	100,000~	102,500~	104,653~	106,746~	108,880~	111,0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 (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인당 과세표준 금액을 도출, 2022년 귀속 기준 1인당 과세표준 금액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고 가정
 - 소득증가에 따른 과세구간 상향이동(bracket creep effect)의 반영은 각 과표구간별 인원수 변동을 통해 반영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현행)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현행 = 1인당 과세표준 ×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 전망,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은 1인당 과세표준에 물가조정계수가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를 곱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 개정안 = 1인당 과세표준 × 물가조정계수가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6~45%)
- (향후 5년간 1인당 세수효과 전망) 1인당 세수효과(결정세액 변화분)는 1인당 산출세액 변화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추계한 후, 이를 1인당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계
 -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은 산출세액 변동에 연동되는 세액공제·감면을 별도로 감안하여 추정
 - 근로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감면액 중 55.5%¹⁾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44.5%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종합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감면액 중 61.1%²⁾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38.9%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향후 5년간 과세표준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는 각 과표구간별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
 - 이전 연도에 비해 상위구간의 인원수 증가율이 높았던 2021~2022년은 제외

1)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
 2)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음

- 추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자(이하 ‘중복자’)의 경우, 이 중복자들을 제외하고 세수효과를 추계
 -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시: 사업소득,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
 -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중 종합소득신고자수 비중을 활용하여 중복자 인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신고 인원(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을 대상으로 총세수효과를 추계
- (근로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9.7조원(연평균 △5.9조원)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합계	-38,888	-48,116	-58,339	-69,592	-82,427	-297,362	-59,472
0~1,400만원	0	0	0	0	0	0	0
1,400~5,000만원	-6,099	-7,902	-9,819	-11,960	-14,304	-50,083	-10,017
5,000~8,800만원	-13,625	-15,983	-18,480	-21,192	-24,129	-93,409	-18,682
8,800만원~15억원	-13,943	-17,361	-21,258	-25,423	-30,314	-108,299	-21,660
1.5~3억원	-4,249	-5,557	-7,073	-8,840	-10,950	-36,669	-7,334
3~5억원	-641	-843	-1,072	-1,341	-1,654	-5,551	-1,110
5~10억원	-258	-360	-480	-625	-799	-2,523	-505
10억원 초과	-73	-111	-156	-211	-277	-829	-166

□ (종합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5.1조원(연평균 △5.0조원)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종합소득세 합계	-34,226	-41,439	-49,413	-58,215	-68,180	-251,473	-50,295
0~1,400만원	0	0	0	0	0	0	0
1,400~5,000만원	-11,847	-13,696	-15,730	-18,034	-20,606	-79,913	-15,983
5,000~8,800만원	-5,810	-6,869	-8,006	-9,256	-10,626	-40,568	-8,114
8800만원~15억원	-7,899	-9,591	-11,459	-13,346	-15,482	-57,777	-11,555
1.5~3억원	-6,909	-8,771	-10,837	-13,162	-15,820	-55,499	-11,100
3~5억원	-1,095	-1,499	-1,959	-2,499	-3,131	-10,183	-2,037
5~10억원	-547	-827	-1,154	-1,545	-2,013	-6,087	-1,217
10억원 초과	-119	-186	-268	-372	-502	-1,446	-289

다. 양도소득세

□ (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 양도소득세는 변동이 큼에 따라, 2020~2022 귀속연도 평균 기준으로 1건당 과세표준을 도출하여 과세표준구간 상향 및 물가연동 반영 전후의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각 구간별 신고건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양도소득세의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국세통계연보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산하여 사용
- 별도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주식 양도소득, 고율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³⁾)은 제외하고, 동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산출세액 추계
 - 별도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비중이 전 과표구간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건당 과세표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주식(24.2%⁴⁾)과 고율과세 대상 자산(17.2%⁵⁾)의 합계(41.4%)만큼 신고건수 및 과세표준이 감소
- 개정안에 따른 총세수효과(총결정세액변화분)는 총산출세액변화분에서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공제·감면대상액의 비중을 차감하여 추정
 - 총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감면항목(8년 이상 자경농민,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의 비중은 2020~2022년 평균, 6.3%

□ (양도소득세 귀속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9조원(연평균 △0.4조원)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양도소득세 합계	-2,785	-3,272	-3,743	-4,199	-4,661	-18,660	-3,732
0~1,400만원	0	0	0	0	0	0	0
1,400~5,000만원	-124	-152	-178	-205	-232	-892	-178
5,000~8,800만원	-412	-454	-494	-533	-570	-2,462	-492
8,800만원~15억원	-771	-869	-964	-1,043	-1,124	-4,771	-954
1.5~3억원	-717	-837	-953	-1,067	-1,183	-4,757	-951
3~5억원	-318	-382	-445	-508	-573	-2,226	-445
5~10억원	-240	-300	-359	-419	-480	-1,798	-360
10억원 초과	-203	-278	-350	-424	-499	-1,754	-351

3)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 미등기 양도

4) 총양도소득 대비 주식양도소득 비중, 2020~2022년 평균

5) 총양도차익 대비 고율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중, 2020~2022년 평균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6.7조원(연평균 △11.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조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7.6	-9.3	-11.1	-13.2	-15.5	-56.7	-11.3
근로소득세	-3.9	-4.8	-5.8	-7.0	-8.2	-29.7	-5.9
종합소득세	-3.4	-4.1	-4.9	-5.8	-6.8	-25.1	-5.0
양도소득세	-0.3	-0.3	-0.4	-0.4	-0.5	-1.9	-0.4

- (징수 기준) 소득세 세목별로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5~2029년 동안 총 49.9조원(연평균 △10.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근로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예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예정신고 기한을 감안하여 3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표 7]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조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3.1	-9.6	-10.4	-12.3	-14.5	-49.9	-10.0
근로소득세	-2.9	-5.8	-5.8	-7.0	-8.2	-29.7	-5.9
종합소득세	0.0	-3.4	-4.1	-4.9	-5.8	-18.3	-3.7
양도소득세	-0.2	-0.4	-0.4	-0.4	-0.5	-1.9	-0.4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